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3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8 인	1 인

1.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3년 10월 16일)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참석임원

- 이사(8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김기영 이사, 오승훈 이사, 김영만 이사, 배일환 이사, 이향철 이사
- 감사(1인) : 배홍기 감사 (불참 : 이동훈 감사)

4. 안 건

- 제2023-25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제청(안)
- 제2023-26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2)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 3) 「감사 규정」 개정(안)
 - 4) 「연구년 규정」 개정(안)
 - 5)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6)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7)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개정(안)
 - 8)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9)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10)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정(안)
 - 11) 「연구윤리 규정」 제정(안)
 - 12)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 1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간서명		김영만	이향철
-----	---	-----	-----

- 제2023-27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1)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2) 광운초등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3) 법인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2023-28호 : 광운초등학교 규정 제·개정(안)
- 제2023-29호 : 남대문중학교 교원 과목변경 제청(안)
- 제2023-3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제2023-31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입실함.)

□ 제2023-25호: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3-25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소속변경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소 속	직종	직급	성 명	발령사항	
				내용	일자
국제교육원	외국인 특별전임	부교수		면 : 국제교육원 근무 명 : 글로벌교육센터 근무	2023.11.01

□ 제2023-26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3-26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간서명		김영만	이행철
-----	---	-----	-----

김재요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감사 규정 개정(안)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미비함을 제기하고, 보완된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감사 규정 개정(안)	부결	-
연구년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연구윤리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 붙임1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제2023-27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1)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2) 광운초등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3) 법인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3-27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 증감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다.

간서명	
-----	--

(단위 : 천원)

구 분	2023학년도 제1차 경정예산액	2023학년도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광운대학교 교비회계	125,667,451	120,349,785	5,317,666	

조선영 의장은 광운대학교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재난예방계획, 건축물 수명주기에 따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대해 총장 임기 시작부터 수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며 후속 조치할 것을 요청하다.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퇴실함.)

이세원 간사는 법인 및 광운초등학교 2023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증감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다.

(단위 : 천원)

구 분	2023학년도 제1차 경정예산액	2023학년도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법인 일반업무회계	1,282,673	1,206,977	75,696	
법인 수익사업회계	1,001,654	950,291	51,363	
광운초등학교 학교회계	7,559,881	7,175,661	384,220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3-28호 : 광운초등학교 규정 제·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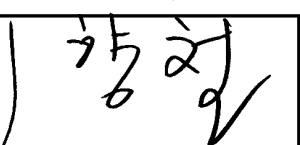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제2023-2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초등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정(안)	원안가결	2023.10.24.

※ 붙임2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간서명		김영만	
-----	---	-----	---

□ 제2023-29호 : 남대문중학교 교원 과목변경 제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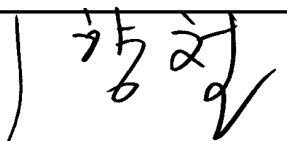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제2023-29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남대문중학교 교원 과목변경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당초 과목	변경 과목
남대문중학교	교사			영어	진로진학상담

□ 제2023-3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간서명		김영만	
-----	---	-----	---

□ 제2023-31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3-30호, 제2023-31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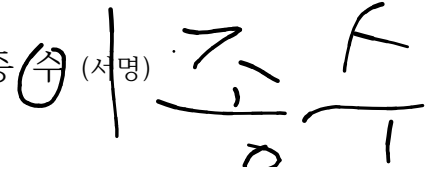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5시 00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김영만	이행철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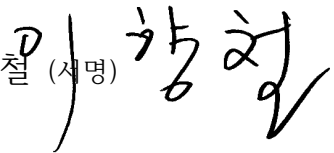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종민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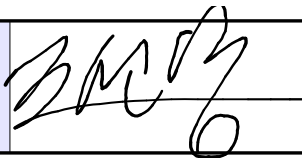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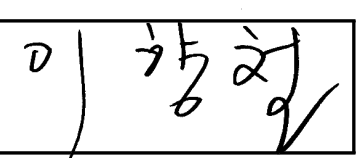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감 사 배 흥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불참


2023. 10. 24.

간서명			
-----	---	--	---

[붙임1]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사유)
<p>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별표 2] 스마트융합 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입학정원 조정</p>
<p><u>부칙(신설)</u></p>	<p><u>부칙 <2023. 10. 24></u>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 [별표 2] 생략

간서명		김영만	김영만
-----	---	-----	-----

[붙임2] : 광운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장 제8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4학급, 4학년 4학급, 5학년 4학급, 6학년 3학급으로, 총 21학급으로 한다.	본교의 학급수는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3학급, 4학년 4학급, 5학년 4학급, 6학년 4학급으로, 총 21학급으로 한다.	학년별 학급수 수정
제3장 제9조 (학생정원)	학생정원은 1,2,3,4,5학년은 28명으로 하고 6학년은 34명으로 한다.	학생정원은 1,2,3,4,5,6학년 모두 28명으로 한다.	학급당 정원 수정
제6장 제21조 (재학생 결원보충)	<p>①본교에 재학생으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p> <p>②본교 전·편입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정한다.</p> <p>⑤입학 포기자 인원이 예비당첨자 명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와,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편입생 모집 재공고를 통하여 예비당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①본교에 재학생으로 재입학 또는 전입학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p> <p>②본교 재입학 또는 전입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정한다.</p> <p>⑤입학 포기자 인원이 예비당첨자 명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와,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 또는 전입생 모집 재공고를 통하여 예비당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용어 수정
제6장 제25조 (귀국학생 의 입학 및 전학)	<p>①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p> <p>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①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재입학 또는 전입학을 허가한다.</p> <p>③귀국자 대상 재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용어 수정

간서명		김영만 이항희
-----	---	---------